평창군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86

제출년월일 : 2016. 1. .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합치하지 아니하는 부분을 개정하여 위법성을 해소하고 법에 합치하는 군정을 구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안 제3조

- 지진피해 위험도 평가 요청규정 삭제(평가 주체는 지역본부장임)

○ 조례안 제10조

- 평가단원의 보험 가입과 관련 주체(평창지역본부장)을 명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15. 09. 23. ~ 2015. 10. 13.) 결과 : 제출의견 없음.

2)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 동의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지진 발생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우려되는 평창군 관할구역의 모든 시설물에 적용된다.

제1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평창지역본부장은 평가단원 등의 위험도 평가 활동과 관련한 사망 또는 상해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평가단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지진 발생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우려되는 평창군 관할구역의 모든 시설물에 적용된다. ② 관할구역 내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는 평창지역본부장이 실시하도록 하되 공공시설물의 경우 평창지역본부장의 요청에 따라 소관 관리주체가 실시할 수 있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지진 발생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우려되는 평창군 관할구역의 모든 시설물에 적용된다.
제10조(평가단원 안전 및 피해 보상) ① (생 략) ② 평창지역본부장은 평가단원 등이 위험도 평가 활동과 관련하여 사망 또는 부상, 또는 상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평가단원을 대상으로 관련 보험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평가단원 안전 및 피해 보상) ① (현행과 같음) ② 평창지역본부장은 평가단원 등의 위험도 평가 활동과 관련한 사망 또는 상해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평가단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비용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5항제1호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

3.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 발생 없음.

4. 작성자

작 성 자	안전건설과장 장 근 용
연 락 처	(033)330-2406

관계 법령

□ 지진·화산피해대책법

제3조(국가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이 법의 목적에 따라 지진재해 및 화산재해(이하 "지진·화산재해"라 한다)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진·지진해일 및 화산활동의 관측·예방·대비 및 대응, 내진대책, 지진·화산재해를 줄이기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책무를 지며, 그 시행을 위하여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2015.7.24.>

② ~ ③ 생략

제21조(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사용가능 여부 등에 대한 위험도를 평가(이하 "위험도 평가"라 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② 제1항에 따라 신속한 위험도 평가를 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을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관련 분야 전문가가 부족한 경우 인근 시·도 또는 시·군·구 거주자를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역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